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578

발의연월일: 2024. 11. 14.

발 의 자: 박은정 · 김준형 · 김재원

서왕진・차규근・조 국

황운하 · 신장식 · 이해민

강경숙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헌법재판소는 법관 임용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 「법원조직법」 제43조제1항제5호 중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음(2024. 7. 18. 선고 2021헌마460).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5조제2항제4호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헌법재판관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어, 헌법재판관이 되려는 자의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

헌법연구관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국가기관에서 4급 이상 또는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를 자격요건으로 정하고 있음. 검 사나 판사의 자격요건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정년은 63세, 판사의 정년은 65세임에 반해, 헌법연구관의 정년은 60세에 불 과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헌법재판관 임용 결격사유 중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여 형평성을 도모하고 헌법재판소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제4호 삭제 및 제19조제7항).

법률 제 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9조제7항 중 "60세"를 "65세"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재판관의 자격) ① (생	제5조(재판관의 자격) ① (현행과		
략)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②		
해당하는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u><삭 제></u>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			
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			
과되지 아니한 사람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헌법연구관) ① ~ ⑥ (생	제19조(헌법연구관) ① ~ ⑥ (현		
략)	행과 같음)		
⑦ 헌법연구관의 임기는 10년	⑦		
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정			
년은 <u>60세</u> 로 한다.	<u>65세</u>		
⑧ ~ ① (생 략)	⑧ ~ ① (현행과 같음)		